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정기관의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9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4
가. 계량기사업자 대장 작성·관리 근거 마련	5
나. 형식승인서 발급 근거 마련	8
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발급 근거 마련	11
2. 검정기관의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2.
3. 회부연월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이라 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계량기를 제조·수리·증명 등의 사업자로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다.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2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게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정증을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Ⅲ. 검토의견

1.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사
업자 대장의 작성·관리, 형식승인서 발급,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정 내용
계량기사업자 대장의 작성·관리	(현행) 시행령 제7조 (개정) 법률 제9조의2 신설
형식승인서 발급	(현행)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발급	(현행)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
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업자 대장의 관리, 증서 발급 등과 같이 행정적·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 계량제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에 일부만을 법률로 상향하고 있어 상향 입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가. 계량기사업자 대장 작성·관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신청 또는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이하 “계량기 제조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7조1),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

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며(제8조2),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3)).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7조4)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계량기사업자 대장 작성·관리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계량기사업자 대장 작성·관리 의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업자 대장의 관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행정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특정 사업자 대장의 관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형식승인서 발급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이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②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항·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형식승인) ① (생략)	제14조(형식승인)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생략)</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현행법 제14조⁵⁾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현행법 제16조제1항⁶⁾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⁷⁾을 받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 제15조⁸⁾는 ①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기관의 장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②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형식승인기관의 장의 형식승인서 발급 의무와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승인서 발급 및 형식승인 변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7) 계량기의 대량생산 전 설계, 구조, 계량오차 등 성능과 안정성 등의 기술기준(규격)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행위(시제품 → 형식승인 → 양산 → 검정 → 출시)

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신고서 제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증 발급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변경신고서 제출은 현행법 시행령⁹⁾과 시행규칙¹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승인서의 발급 및 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발급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시·도지사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② 지정증을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제4항·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증을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도록 하고¹¹⁾,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도록 하며¹²⁾,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재검정 대상 외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¹³⁾.

또한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수입·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⁴⁾.

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2)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3)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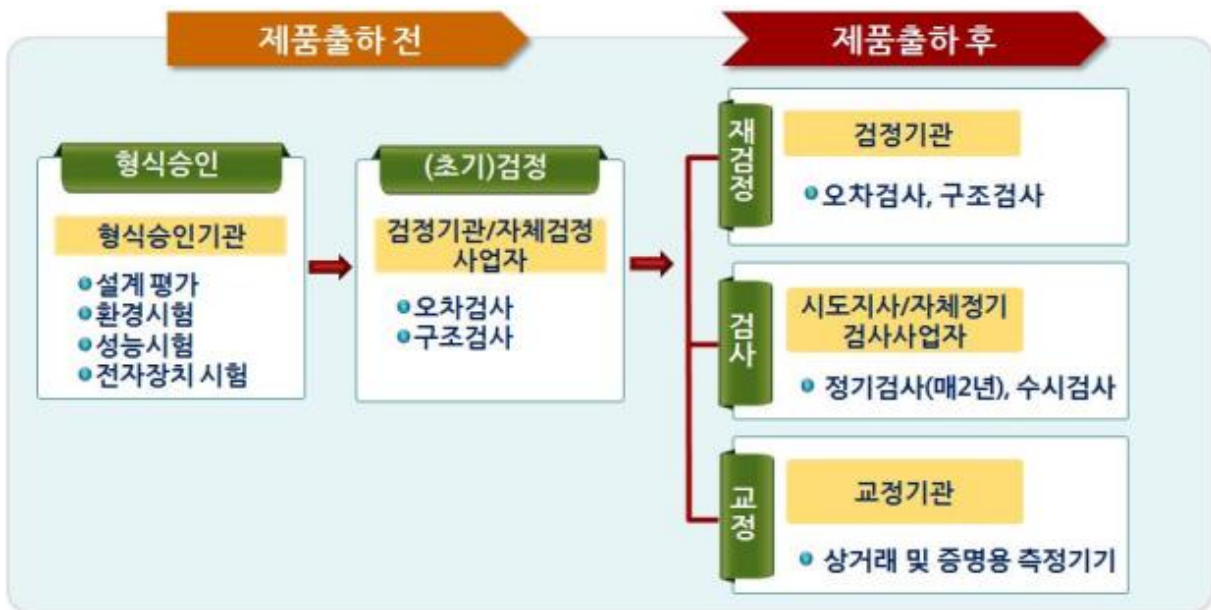
14)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정 계량기 관리체계]



현행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¹⁵⁾은 ① 시장·군수·구청장¹⁶⁾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지정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재 시·도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 대한 지정증 발급 의무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자체수리자 지정증, 형식승인기관 지정증,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은 현행법 시행규칙¹⁷⁾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17)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검정업무 수행범위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정기관의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검정기관이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검정)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23조(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법¹⁸⁾은 상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도

1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② (생략)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형식승인제도 및 검정제도 비교]

구분	형식승인	검정
정의	계량기의 대량생산 전 설계, 구조, 계량오차 등 성능과 안정성 등의 기술기준(규격)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행위	계량의 정확도가 검증된 계량기 유통을 목적으로, 출하 전 제품이 형식승인 당시의 구조, 계량오차와의 동등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증인을 부착하는 행위
대상	계량기의 설계 및 모델(형식)	개별 계량기
목적	모델의 적합성 확인	개별 제품의 성능 확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검정기관과 형식승인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결과 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 지정기관]

기 관 명	관련 업무	세부내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형식승인 및 검정	법정 계량기 전 품목(13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2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검정기관이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
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검정기관의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관련 자
료제공 요청 근거가 마련될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형식승인 결
과 자료의 제출 부담이 감소되고 검정기관의 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검정기관이 형식승인
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한
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4
